#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11.18] (일부개정) 2021.11.18 조례 제2572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사회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0559604800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」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희생·공헌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
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
- 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 람을 말한다.
- 3. "국가보훈 관계 법령"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- 4. "보훈단체"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.
- 5. "참전유공자"란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 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6. "전몰군경"이란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7. "전상군인"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.
- 8. "순직군인"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.
- 9. "공상군인"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군인을 말한다.

제3조(주민의 책무) 모든 주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함양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예우 및 지원

제4조(예우 및 지원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.

제5조(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) 군수는 국경일 ·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
- 2. 좌석배치에서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를 배려하는 등 의전상 예우

제6조(공훈선양 사업의 추진) 군수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

- 1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의 공적 게재
- 2.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 · 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

- 3.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
- 4. 보훈 관련 기념일・추모일 등 행사 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위문
- 5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
- 6.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
- 7.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 · 공헌자의 업적 선양

제7조(보훈단체 지원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신장·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·운영
- 2. 호국·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, 전적지 순례비 등
- 3.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 종 사업비
- 4. 호국·보훈의 달 각 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

제8조(생업지원) ① 군수는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,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일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.

제9조(공공시설 이용 지원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공공시설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.

- 1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- 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
- 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## 제3장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등

제10조(지급 대상 및 기준) 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,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명예수당, 명절 위문금, 사망위로금(이하 "수당 등"이라 한다)의 지급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. 다만,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 11. 18.>

- 1. 명예수당
- 가. 참전명예수당 : 6.25참전유공자, 월남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의 유족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<개정 2021. 11. 18.>
- 나. 보훈명예수당 :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
- 2. 명절 위문금: 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(설명절에 한정하여 지급한다)<신설 2021. 11. 18.>
- 3. 사망위로금 : 사망한 참전유공자 <개정 2021. 11. 18.>
-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금액은 별표로 정한다.

제11조(지급신청 및 지급결정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- 1.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나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
- 2.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확인된 경우
-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가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[전문개정 2021. 11. 18.]

제12조(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) ① 군수는 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시기는 매월 15일로 하고, 신청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.
- ③ 군수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명예수당을 지급한다.

#### 제4장 보칙

제13조(명예수당의 지급 중지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
- 1.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 관할구역 밖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

**제14조(명예수당의 환수)**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
- 2.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(缺損處分)할 수 있다.
- 1. 행방불명인 경우
- 2. 재산이 없는 경우
- 3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5조(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군수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<제정 조례 제2393호 2018. 12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①「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조례 제2227호)를 폐지한다.

②「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(조례 제2356호)를 폐지한다.

## 부칙<일부개정 2020. 1. 30. 조례 제246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2항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부칙<일부개정 2021. 6. 17. 조례 제254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칙<일부개정 2021. 11. 18. 조례2572호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